

용현자이 크레스트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문의
032-710-8984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만19세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인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계약시 공급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80%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금대출은 사업주체 에서 알선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약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현자이 크레스트[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04.29.(목)]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용현자이 크레스트[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04.29.(목)]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및 부적격 당첨된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방문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상황 해제시 까지)]

- 당 사업지 “용현자이 크레스트”는 현재 견본주택 운영을 하지 않으며,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분양사무소 방문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1.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2.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체온 확인 시 체온 37.3도가 넘는 경우
 3. 당사 분양사무소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자격 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 상담 전화(032-710-898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15.(금)**, 주택관리번호는 **2023910131** 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29.(목)**,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224** 이며, 이후 부적격 당첨 및 계약조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게시된 최초 공고문과 용현자이 크레스트 홈페이지(https://xi.co.kr/ICY)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인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 하며,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용현자이 크레스트 기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는 제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준공 완료 및 입주 중이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 미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용현자이 크레스트 홈페이지(https://xi.co.kr/ICY)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된 동호에 대한 사전방문을 진행할 예정오니, 세대 방문시 상품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주택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주택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의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은 1순위 청약마감 및 계약 완료 단지로 부적격 당첨과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해지된 세대를 재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단 외국인인 신청불가) 본 주택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O	X	X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주택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제 64조 1항에 의거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유무기간이 적용됩니다.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	거주유무기간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2024.05.20.)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 거주유무 부기등기 및 거주실태조사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본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57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 부기등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제1항에 의거 입주자는 거주유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 이라고 표기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의 실제 거주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들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거주유무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12월 20일(수)	12월 26일(화)	12월 28일(목) ~ 29일(금)	24.1월 3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공고문 참조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분양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인천시 미추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35-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주택 지하 2층 ~ 지상 34층, 17개동, 총 2,277세대 중 계약해제분 4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1월(무순위(사후)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완납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 공급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무순위(사후) 공급세대 동, 호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공 주택	2023910131	01	059.9700A	59A	59.9700	22.4500	82.4200	37.9500	120.3700	31.5200	3	108동 2403호, 115동 2001호, 117동 3201호
		02	084.9900A	84A	84.9900	30.3100	115.3000	53.7900	169.0900	44.6700	1	111동 404호
	합 계										4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I 주택 공급금액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	주택 공급 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용자금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059.9700A	59A	108동 2403호	334,500,000	66,900,000	267,600,000	55,000,000
		115동 2001호	329,500,000	65,900,000	263,600,000	
		117동 3201호	339,500,000	67,900,000	271,600,000	
084.9900A	84A	111동 404호	445,000,000	89,000,000	356,000,000	-

※ 금회 무순위(사후) 공급되는 주택은 부적격 당첨 및 계약조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므로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선택·변경이 불가하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상한금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등 추가선택 품목은 기존 내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개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기준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 및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안내

- ※ 본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NH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주택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오며,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잔금도 해당세대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용자금은 별도의 계좌에 입금해야합니다.(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잔금 80% 로 나누어 납부 하며, 잔금 80%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납부바라며, 이후에는 주택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요건에

따릅니다.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수입인지 가격 15만원)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계약 품목 및 무상 선택 품목(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 -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 방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	확장 금액	계약금(20%)	잔금 (8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59A	108동 2403호	8,400,000	1,680,000	6,720,000
	115동 2001호			
	117동 3201호			
84A	111동 404호	10,300,000	2,060,000	8,240,000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잔금도 해당세대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금액은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어 주택형별, 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습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플러스 옵션 내역 및 납부방법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	무상옵션		유상옵션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스타일 옵션	냉장고장	천장형 에어컨	BIS 냉장고	BI 김치 냉장고	식기 세척기	광파오븐	하이브리드 쿡탑	현관중문	드레스룸	바닥 포셀린 타일	마감 스타일업	조명 스타일업								
59A	108동 2403호	라이트톤 선택형 1	선택형 1	선택 3 (거실+침실1,2,3)	-	-	-	-	-	-	-	-	-	-	-	-	-	8,990,000	1,798,000	7,192,000		
				5,610,000																	1,500,000	1,880,000
	115동 2001호	라이트톤 선택형 1	선택형 1	선택 3 (거실+침실1,2,3)	-	-	-	-	-	-	-	-	-	-	-	-	-	7,110,000	1,422,000	5,688,000		
				5,610,000																	1,500,000	-
	117동 3201호	라이트톤 선택형 1	선택형 2	선택 3 (거실+침실1,2,3)	-	1,600,000	-	-	-	500,000	-	-	-	-	-	-	610,000	1,590,000	2,610,000	15,900,000	3,180,000	12,720,000
				5,610,000																		
84A	111동 404호	미디움톤 선택형 2	선택형 1	-	-	-	-	-	-	-	-	-	-	-	-	880,000	1,720,000	-	2,600,000	520,000	2,080,000	
				-																		-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오며,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잔금도 해당세대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광파오븐 옵션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됩니다.

※ 59A 타입 벽판널형 드레스룸 선택시 선반 조명이 포함되며, 해당실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고 인근 온도조절기에서 통합제어 됩니다.

※ 59A 타입 벽판널형 드레스룸 미선택시 좌식형 파우더장과 일판 포스트형 드레스룸 선반이 기본 제공됩니다.

※ 바닥 포셀린타일 미설치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 -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공급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I 입주금 납부 안내

- ※ 잔금은 입주 시 세대 출입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 잔금 납부 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이며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출입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실입주일(열쇠수령일) 또는 2024.01.31. 이후 부터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 납부일 또는 2024.01.31.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I 신청자격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만19세이상 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구성원에게 1인당 1주택기준으로 공급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용현자이 크레스트(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04.29.**)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용현자이 크레스트(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04.29.**)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및 부적격 당첨된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I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무순위(사후)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12.26.**)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예비입주자 관련

- **당첨자 선정 시 잔여물량의 9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신청자 수가 1,0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되며, 공급방식 및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옹현자이 크레스트 분양사무실(032-710-8984)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hyo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쑤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2.26.(화) ~ 2024.1.4.(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무순위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12.2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일정

구분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비고
무순위(사후) 청약 당첨자	12월 28일(목) ~ 29일(금) 10:00 ~ 17:00	당사 분양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예비 당첨자			

■ 당첨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배우자도 대리인에 포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 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 신청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외에 체류중이며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중인 경우 청약불가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원'과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단신부임 해외근무 자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는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사실 증빙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본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국의 체류기간 연속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축물 철거명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서류	• 기타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 [2023.12.15.(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일정	서류 제출 장소	비고
무순위(사후) 청약 당첨자	2024.1.3.(수) 10:00 ~ 16:00	당사 분양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예비 당첨자	추후 안내 예정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각 세대별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는 자격확인 서류 제출시 안내드립니다.(현금 및 수표수납 불가)
- 예비당첨자는 계약 체결 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계약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따라 자격 여부 확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당 자격 확인 후 계약서 불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 수	추 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배우자도 대리인에 포함)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도장	본인	• 자격 확인서류 제출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청약자격 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자격 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서류	• 기타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첨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12.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 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명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후 익월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분실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구입)
기재 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최초 분양 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및 계약 일정: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주택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04.07.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당첨자 발표일인 2021.05.20.으로부터 3년 혹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이며(둘 중 빠른날짜), 주택법 제57조의2에 의거하여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간 거주무기간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하기의 내용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4.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www.applyhome.co.kr))

-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법」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사업자 등록번호)		시공사 (사업자 등록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131-82-13727	지에스건설(주)	104-81-18121
지에스건설(주)	104-81-18121	금호건설(주)	104-81-31309
금호건설(주)	104-81-31309	(주)태영건설	105-81-74543
(주)태영건설	105-81-74543	(주)신성건설	418-81-10256
(주)신성건설	418-81-10256		

■ 분양사무소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 분양문의 : 032-710-8984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중 10:00 ~ 11:30 / 13:00 ~ 17:00)

■ 용현자이 크레스트 홈페이지 : <https://xi.co.kr/ICY>

■ 자이TV 용현자이 크레스트 안내 : <https://youtu.be/xHteGdP8-88>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이외의 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 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 계약서가 우선합니다.)